

하안주공 3·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, 지형도면 고시

하안동 650번지 일대 하안주공 3·4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의8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, 제101조의9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5월 29일

광 명 시 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하안주공 3·4단지 재건축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정비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설	하안주공 3·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	광명시 하안동 650번지 일대	127,286.7	-

3. 사업시행예정일: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사업계획인가

4. 계획인구 및 세대수: 9,886인(4,119세대)

※ 계획인구 및 세대수는 정비사업계획인가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5. 사업시행자 지정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: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(대표: 박종철) ☎ 02-528-0586
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(대표: 성채현) ☎ 02-2190-9800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(삼성동, 아셈타워)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(역삼동, KB라이프타워)

6.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9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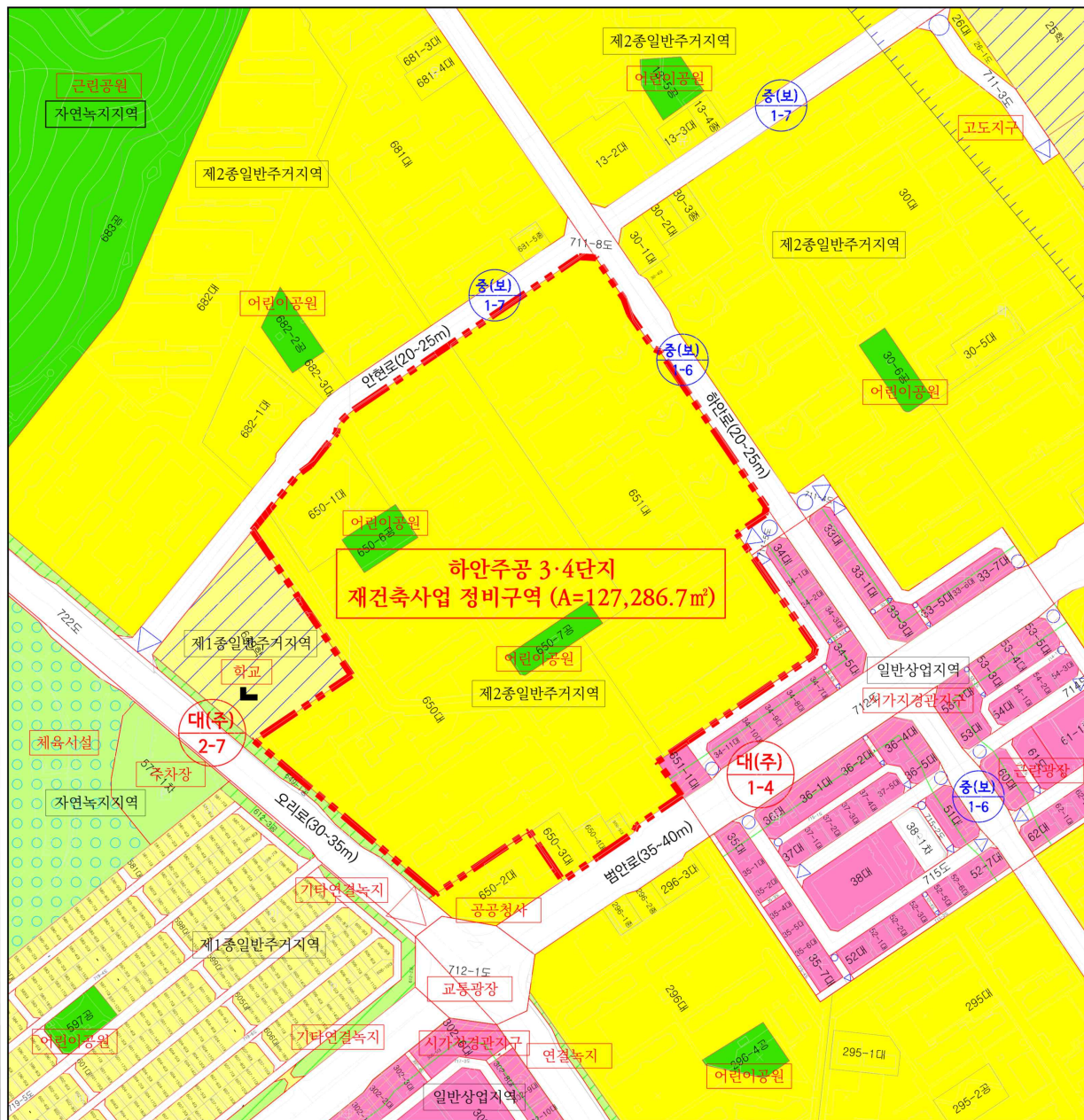
가. 행위제한: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분할·합병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(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 필요)

나. 건축물대장 제한: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내 건축물대장의 전환(일반→집합)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이 제한됨(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)

7. 지형도면 : 붙임 참고

붙임: 정비구역 결정도

정비구역 결정도



하안주공 3·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

정비구역 결정도

■ 범 례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|
| 정비구역 | 도로(대로이상) |
| 지적선 | 도로(중로이하) |
| 제1종일반주거지역 | 공원 |
| 제2종일반주거지역 | 기타녹지시설 |
| 일반상업지역 | 체육시설 |
| 자연녹지지역 | 학교 |
| 시가지경관지구 | 기타 도시계획시설 |
| 고도지구 | |

